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제안 이유

○ 민간위탁사무중 『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』 사무를 보조 사업으로 전환 삭제하고자 함

주요 골자

○ 국제통상과 소관 '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'를 삭제

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제통상과 소관 "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"사무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사무(수탁기관의 명목과 책임)에 부적합하여 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,

○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보조사업으로 전환될시 앞으로 달라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등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.

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※ 위임·위탁사무의 정의

- 사무위임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임
- 위탁사무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기관·단체·민간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임
- 대행사무 :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사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됨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